

제120조의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20조의3의 요약

- 부가세 면세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함.
- 미제출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공급가액×1%)가 부과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매 6개월마다의 부가세 확정신고때 제출한 경우도 적법히 제출한 것으로 봄.

● 제120조의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1. 본 조의 개요

세금계산서 자료수집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개인면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매년 1월 말일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에는 본 법 제76조제9항에 의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확정신고시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제출의무 규정의 이유

①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매년 1월 31일까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산세가 부과되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거래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63조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① 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 ② 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2007. 2. 28 신설)